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2025. 1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5-116

나. 제 안 자: 이상원 의원 외 9인

다. 제안일자: 2025년 10월 13일(월)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화)

2. 제안사유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마포구 조례는 지정 요건을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로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상권은 지정에서 배제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고, 조례 제명에 ‘활성화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근거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30개→25개)하고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안 제2조제1호)

나.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제11조, 제11조의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입법예고: 2025. 10. 2. ~ 10. 10.(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개정 목적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의 목적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하며, 그 요건은 원칙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구역임.
- 다만,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음(시행령 제2조의2 단서).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실정 반영을 위해 점포 수 요건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이미 15개 또는 25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마포구는 여전히 30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은 지정에서 배제되고 제도적 지원²⁾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의 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혜택 >

- 온누리상품권 가맹자격 부여(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 예산지원 가능(상인교육, 경영컨설팅, 행사비용 지원 등)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점포 수 요건을 30개 → 25개로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의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상권의 균형적 발전 및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요건 현황 〉

요건	자치구
15개 이상	7개 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중구
25개 이상	3개 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30개 이상	11개 구 마포구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 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	4개 구 광진구, 노원구, 성북구, 양천구

나. 주요 내용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안 제2조제1호)

- (현행) 2,000 m^2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개정) 2,000 m^2 이내 면적에 동일 기준 점포 25개 이상

- 마포구는 상업 밀집지역³⁾으로서, 15개 점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소규모 상권까지 지정되어 행정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의 상권 구조, 점포 밀집도 등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5개 점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 ----- -----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u>30개</u>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1. ----- ----- ----- ----- <u>25개</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현재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총 8개

(2) 지원사업 근거 신설(안 제6조)

-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환경개선, ▲상인교육·문화프로그램, ▲축제·홍보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로·강서·송파를 제외한 21개 구는 이미 유사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또한, 지원사업 근거 조항의 신설은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 중인 상인교육·축제·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로서, 행정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지정 요건 완화로 지나치게 소규모 상권까지 포함될 경우, 상점 간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의 편차로 인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의 공신력 저하 및 전통시장과의 경쟁 심화, 행정관리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는 정기적인 관리·평가 체계 구축과 품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상인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등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의견서

-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 발의자 : 이상원 의원
- ☐ 검토의견

구 분	조례안 사전검토 의견
법령상 검 토	○ 상위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예산상 검 토	○ 제6조(지원사업)를 추진할 경우 예산 편성이 요구됨
행정적 검 토	○ 상기(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25개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조 문 수 정	○ 제2조제1호 중 “30개”를 “(15개/25개)”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30개”를 “25개”로 한다.
기 타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 1. 검토 조례안 1부

검토자 | 경제진흥과 : 과장 권준희, 시장활성화팀장 박재숙(8581), 주무관 최현민(858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